

## LINC 3.0 사업단 운영 규정

2022. 03. 01. 최초제정

2022. 09. 01. 부분개정

2022. 11. 01. 부분개정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‘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(LINC 3.0)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에 설치한 LINC 3.0 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09.01.>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(LINC 3.0)의 추진과 사업비 집행·관리 등 사업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사업기간)**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본 사업의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사업단은 다음 각 호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연 협력 친화형 제도 및 산학연 공유·협업체계 구축
2.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및 신산업 기반 융·복합형 교육과정 운영
3. 현장수요 기반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
4. 산학연 연계 친화형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
5. 대학 특화분야 산학협력 브랜드 창출 및 운영
6.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운영 및 성과관리
7. 현장 애로기술 지도 및 자문
8. 산학연 연계 공동 활용장비 구축 및 운영
9. 산업체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및 활성화
10. 가족회사 운영 및 활성화
11. 산학연 공유·협업 플랫폼 구축·운영 및 성과 창출 확산
12. 기타 본 사업 목적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

### 제2장 조직 및 운영

**제5조(사업단장)** ①사업단은 사업단장을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단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②단장은 본 사업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
2.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
3.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보고
4.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

5. 본 사업과 연계된 대학 특화사업 운영 및 관리
6. 그 밖의 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

**제6조(하부조직)** ①사업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운영팀, 기업협업센터(ICC), 공용장비활용센터를 둔다.<개정 2022.09.01.>

②제1항의 하부조직에는 센터 및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및 팀장을 둘 수 있다.

**제7조(행정지원)** 사업단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행정인력 등을 둘 수 있으며, 제반 사업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.

### 제3장 위원회

**제8조(위원회)**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
1. LINC 3.0 사업단 위원회
2. LINC 3.0 자체평가위원회
3. LINC 3.0 사업실무위원회

**제9조(LINC 3.0 사업단 위원회)** ①본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, 사업의 계획·집행·관리 등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LINC 3.0 사업단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단,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.<개정 2022.09.01.>

1.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
2. 사업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본 사업의 평가결과에 대한 차기 개선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
4. 본 사업의 정책방향 및 조정
5. 본 사업의 성과지표관리에 관한 사항
6. 본 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7. 본 사업에 필요한 대학의 행·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8. 기타 사업단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

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④위원의 구성은 LINC 3.0 사업과 관련된 보직자와 산업체 및 정부 또는 지자체 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를 내·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<개정 2022.09.01.>

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내부위원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보직 임명에 따른 신임 보직자는 위원직을 당연 승계한다.<개정 2022.09.01.>

**제10조(위원회 의결)**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1조(LINC 3.0 자체평가위원회)** ①본 사업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평가하기 위하여 LINC 3.0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의 달성정도 확인 및 평가

2. 평가결과 보고 및 환류 이행과정 점검

3. 사업비 집행의 적합성 점검 및 개선조치 권고

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정한다.<개정 2022.11.01.>

④위원의 구성은 연구개발 및 교육경력이 있거나 경제·산업·언론·정부 및 지자체 기관 등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내·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외부위원 변경은 본조 제4항을 준용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⑥LINC 3.0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자체평가위원회 결과를 LINC 3.0 사업단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LINC 3.0 사업실무위원회)** ①본 사업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LINC 3.0 사업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추진 사업별 운영 및 주요 성과 관리에 사항

2. 추진 사업별 자체평가결과에 관한 이행 및 환류에 관한 사항

3. 추진 사업별 사업비 점검 및 집행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.<개정 2022.09.01.>

④위원의 구성은 대학 교원 및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.

⑤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 추진 기간의 해당 직무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, 인사이동에 따른 신입 직무 해당자는 위원직을 당연 승계한다.

**제13조(LINC 3.0 사업 모니터링단)** ①본 사업의 운영개선과 만족도 평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LINC 3.0 사업 모니터링단을 둔다.

②LINC 3.0 사업 모니터링단은 산업체 및 대학 구성원으로 별도 구성하여 운영한다.

## 제4장 사업비 관리

**제14조(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)** ①사업단의 수입·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 계상을 원칙으로 하며, 교비회계로 이전 할 경우에는 교비회계 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.

②회계관련 제반사항은 사업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지침과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따른다.

**제15조(기타)**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관기관의 운영규정과 대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